

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(최유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7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31일

발 의 자: 최유희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규남, 김영옥, 김영철,
김재진, 김태수, 김형재,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
박중화, 신동원, 유만희,
유정인, 이종환, 채수지,
최민규, 허 훈, 황철규
의원(18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은 2023년 1월부로 종료되었으며,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지원협력사업 역시 2025년 폐지가 확정되어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사라졌음.
- 조례가 유지될 경우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련 규정이 남아 있어 행정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,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법령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.

2. 주요내용

가.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 - (재정지출) 조·항 삭제에 수반되는 직접적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
 - (재정수입) 각종 자료 및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「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근거로 하는 별도의 사업수입¹⁾은 없으므로 동 폐지안에 수반되는 재정수입 순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[세입감소 영향 검토 필요성] 통상 폐지에 따른 비용발생은 없으나, 해당 조례를 근거로 하는 별도의 사업수입 감소가 있을 수 있어 폐지에 따른 세입감소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